

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도록 함(안 제9조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최 기 도)